

환경관리 **질의응답**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 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측정 면제 방법

Q 당사는 배출허가시 고온소각로에서 불화수소(HF)가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3종이지만 월2회 자가측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소각물이 없어 월3~6일정도만 가동하고 나머지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단 8월은 월3일씩 2번 소각하여 측정할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소각물이 없어 폐쇄 신고예정입니다. 그러면 3~7월 사이 자가측정을 1회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가측정은 배출시설의 가동 중에 실시하면 될 것이며, 매월 2회 이상 측정해야 하나 배출시설의 가동이 없어 매월 2회 이상 측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가동되는 날에 측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자가측정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동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토양오염도검사 및 복원에 관한 질의

Q 토양오염도 검사 시 시료채취지점에 관한 질의입니다. 유류탱크 10만리터 6기가 한 옹벽안에 혼재되어 있을 경우 토양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료는 몇 지점을 채취해야 하나요?(모든 유류저장탱크는 100m 이내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양정화검증시 시료수 산정기준은 '환경부 고시 제2005-194호'에 의거하여 오염면적이 500m² 이내일 경우 5지점이상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면적이 가로2m, 세로2m 일 경우, 오염면적이 매우 협소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시료채취를 5지점 이상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오염도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50만 리터 이하인 저장시설이 1개 이상 있는 경우에 2개

지점에서 채취하도록 하며, 개별 저장시설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채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양정화검증방법 및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화부지 면적이 500m² 이내인 지역의 토양정화 완료검증 시료는 5개 지점 이상을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오염부지가 4m²(2m×2m)로 협소한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을 선정하여 적절하게 시료채취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이옥신/TMS자가측정 문의

Q 당사는 사업장폐기물 소각로를 운용 중입니다. 클린시스에 SOx, NOx, CO, O₂, HCL, Dust를 전송 중인데 이 경우에 다른 항목-예를 들면 중금속들은 클린시스 전송 전과 마찬가지로 매주 자가측정해야 합니까?

아울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관련 질의입니다.

당사는 소각로와 폐수처리장을 운용 중이며 소각로에서 발생한 폐수는 폐수처리장을 통해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효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다면,

- ① 다이옥신을 측정해야만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은지 확인 바랍니다. 1-1) 소각로 굴뚝(가스) : 연 1회 1-2) 소각로 Fly ash : 연 1회 1-3) 소각로 Bottom ash : 연 1회 1-4) 소각로 폐수 : 폐수처리장 투입 전, 연 1회 1-5) 폐수처리장 처리 후 방류수 : 연 1회

현재 당 공장 소각로는 2톤 미만으로 연 1회 굴뚝에서만 다이옥신을 측정해오고 있습니다. ② PCB의 경우 변압기의 절연유 교체시 마다 측정하여야 하는지요 또는 매년 측정해야 하는지요.

A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별표11 비고4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해당 항목에 한하여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굴뚝 자동측정기

기를 설치하여 먼지항목에 대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배출구의 경우는 매연항목에 대하여도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자동 측정되는 해당 항목을 제외한 중금속 등 기타 자가측정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자가측정 주기에 따라(1종인 경우 매주) 자가측정해야 합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자가측정 주기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배기가스는 소각시설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은 12개월마다 1회이상, 폐수는 12개월마다 1회이상이며, *변압기의 PCBs측정은 유입식변압기만 해당되며, 금번 PCBs측정하여 변압기를 신고하면 폐기시까지 사용(다만, 2ppm이상은 절연유 교체시 PCBs측정하여 변경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총량제에 관한 문의

Q 현재 1종사업장으로서 20T/hr 2기(사용 중), 30T/hr 보일러 1기(예비), 소각로 1기가 가동 중입니다. 보일러는 BC를 사용하고 있으며 소각로는 공정 중에 발생하는 폐지를 사용합니다. TMS는 소각로와 보일러 각각 나뉘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배출총량을 할당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보일러의 연료를 BC에서 LNG로 전환한다면 다음 각각의 경우 소각로의 TMS는 유지한 채 보일러에 설치된 TMS를 철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각각의 경우 이미 할당받은 총량 중 연료전환으로 감축한 오염물질로 배출권거래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009년 7월 이후를 기준) **case1** : 소각로의 오염물질량에 의하여 3종 사업장이 되는 경우 가)보일러에 설치된 TMS철거유·무? 나)배출권거래 가능여부? **case2** : 소각로의 오염물질량이 미미하여 종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경우(일반민원 1AA-0708-039352 답변에 의거 보일러는 배출시설 제외)가)보일러에 설치된 TMS철거유·무? 나)배출권거래 가능여부?

A *2009. 7. 1일부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별표2)에 따라 대기 1~3종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 등에서 연간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각각 4톤(질소산화물), 4톤(황산화물), 0.2톤(먼지)을 초과하는 경우,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2의 규정에 따른 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총량관리사업자는 연료전환(BC→LNG) 등에 따른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로 당해 연도내에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총량관리사업자가 연료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종 내지 5종 사업장으로 종 변경이 될 경우, 특별법에 의한 총량관리 사업장으로 관리를 받지 않게 되며,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은 전량 회수되어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총량관리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과 관련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종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NOx의 배출량이 많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로 관리되는 LNG보일러(경질유 보일러 포함)를 사업장 총량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대기관리과(02-2110-7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및 재이용 하는 사업장의 관리인 기준

Q 당사는 종별로는 5종에 해당되지만 특정유해물질이 나와 3종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된다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2에 비고1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폐수를 방류를 하지않고 재이용 및 일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하지않는 사업장에서도 3종에 해당하는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건가요?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비고 1'에 따라 3종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m³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관련

Q 저희 사업장은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폐수처리오니 등 1일 100kg 이상 폐기물이 발생하여 폐기물배출자신고가 이루어져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포함하여 사업장생활폐기물이 1일 150kg이 나옵니다.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의 경우 1일 100kg과 1일 300kg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배출시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생활폐기물이며 1일 300kg을 생활계로 보고 있으므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로 월 평균 배출량(최근 6개월간 배출량 기준)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